2017년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법학회 공동토론회 종합보고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보도

▮일 시▮ 2017. 11. 6. (월) 14:30 ~ 17:00

▮장 소▮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 언론중재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2017년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법학회 공동토론회 종합보고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보도

2017. 11. 6

언론중재위원회

2017년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법학회 공동토론회 종합보고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보도

▮일 시▮ 2017. 11. 6. (월) 14:30 ~ 17:00

▮장 소▮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 언론중재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 이 책에 게재된 논문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법학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목 차

■ 위원장 인사말 ····· 1

■ 한국언론법학회장 인사말 ····· 3

■ 행사일정 ····· 5

■ 발표 및 토론 ····· 7

[세션 1]

<주제발표>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재판중계방송 허용 논란을 중심으로 ····· 강동욱 / 7

Ⅰ. 머리말 ····· 9

Ⅱ. 재판공개 및 재판중계에 관한 현행 법제 ····· 10

Ⅲ. 재판중계방송 허용을 둘러싼 권리논쟁 ····· 19

Ⅳ. 재판중계방송 허용이 '사법신뢰 회복'에 미치는 영향 ····· 24

Ⅴ. 맺음말 ····· 28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1 ····· 권혁중 / 33

지정토론문 2 ····· 정문식 / 39

[세션 2]

<주제발표> 사법보도를 둘러싼 법익충돌 -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장철준 / 45

Ⅰ. 서론 …… 47

Ⅱ. 언론의 사법보도 현실과 명예훼손 …… 50

Ⅲ.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 …… 58

Ⅳ. 결론 : 언론의 사법보도 개선을 위한 제언 …… 63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1 …… 김양순 / 67

지정토론문 2 …… 허진성 / 75

[종합토론]

종합토론문 …… 81

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양인석입니다.

만추(晩秋)의 아름다운 날, 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공동 주최를 맡아 애써 주신 한국언론법학회 이재진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위원회-한국언론법학회 공동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보도'를 주제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재판 중계방송 허용 논란과 언론의 사법보도 관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법보도라는 개념이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요체는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점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와 관련한 논의 및 구체적 기준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 국내 정치상황과 관계된 사건의 재판 진행과정 등을 보면, 각종 재판보도를 둘러싼 이론적 관점들을 소개하고 실무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공동토론회에서 사법보도와 관련한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져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동국대 강동욱 교수님·단국대 장철준 교수님, 지정토론을 맡아 주신 권혁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님·한양대 정문식 교수님·KBS 김양순 기자님·대전대 허진성 교수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충남대 이승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계와 학계, 그리고 법조계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저치 마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양 인 석

한국언론법학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이재진입니다.

날씨가 꽤 차가워졌습니다만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날입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공동토론회에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공동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양인석 위원장님과 여러 중재위원님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측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공동토론회는 한국언론법학회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공동토론회의 주제가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사법보도는 국민들이 사법과정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이에 있어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공동토론회가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동토론회를 통해 한국언론법학회 역시 그 위상과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기회가 허락한다면, 오늘 같은 공동토론회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와 발제자, 토론자를 비롯해 오늘 공동토론회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사)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이 재 진

행 사 일 정

11월 6일 (월)

14:30 ~16:50 |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이 승 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위원)

[세션 1]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재판 중계방송 허용 논란을 중심으로 -

▌발 제▐

강 동 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권 혁 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정 문 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션 2] 사법보도를 둘러싼 법익충돌 –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 제▐

장 철 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

▌지정토론▐

김 양 순 (한국방송공사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허 진 성 (대전대 법학과 교수 /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16:50~17:00 | 종합토론

[세션 1] 주제발표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재판중계방송 허용 논란을 중심으로 -

강 동 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재판중계방송 허용 논란을 중심으로 -

강 동 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머리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이하 '알권리' 라고 한다) 보장을 이유로 하여 재판중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중계 허용은 아직 유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마치 유죄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결과가 되고, 중계방송을 통해 피고인의 신원 등이 공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며, 더구나 여론의 영향에 의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학자나 법원의 태도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반면, 일반인의 경우 법정시설의 협소함으로 인해 법정출입이 제한되면서 주요한 재판의 경우에는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하급심의 경우에도 재판중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강해지고 있다. 대법원도 2017년 8월 4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751호, 시행 2017. 8. 4.)을 개정하여 그동안 '재판개시 전' 에만 허용하던 재판중계를 '판결선고' 의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규칙 개정은 재판중계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 양측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히, 형사재판을 중심으로 재판중계에 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제 및 재판중계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보고, 사법신뢰확보

수단으로서의 재판중계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1)]

Ⅱ. 재판공개 및 재판중계에 관한 현행 법제

1. 재판공개에 관한 현행 법제

가. 재판공개에 관한 법규

헌법 제27조 제3항 후단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함으로써 사법밀행주의를 배격하고 공개재판의 원칙을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109조에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는 헌법 제109조와 동일한 규정을 두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59조에서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이하 '촬영 등 행위' 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장의 촬영 등 행위의 허가에 관해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

1) 이 글은 강동욱,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본 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4호, 대검찰청, 2017. 3, 122-155면; 강동욱, "국민의 알권리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중계의 허용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세계헌법연구」 제23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7. 4, 101-126면 등을 기초로 하여 정리한 것임.

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고 함으로써 허가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함으로써 허가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17년 8월 4일 동 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2751호, 시행 2017. 8. 4.)을 통해 제5조 제1항에서 촬영 등 행위가 허용되는 범위를 종전의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 에서 ‘판결 선고 시’ (제1호)까지 확대하는 한편,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 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촬영 등의 행위에 있어서 “2. 법단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촬영 등의 행위방법에 대한 일부 제한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2014년 8월 6일「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개정(대법원규칙 제2548호, 시행 2014.8.6.)을 통해 제6조[2]에서 하급심 재

2) 동 개정은 소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한 것이며, 제1항 제2호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

판에서도 법원 시설 내에서의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재판장은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 을 받아 ‘소속 법원 내의 시설’ 에서,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을 받아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에서 중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2항, 제3항). 다만, 이때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4항). 동 규정은 법정의 공간적 한계를 감안하여 법정이 아닌 ‘법원시설 내의 다른 장소’ 에 한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해 재판공개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일반 국민을 위한 TV 등에 의한 재판중계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공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공판절차상 공개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판의

생한 사건의 경우 ‘사실심 재판을 일정 부분 중계하는 것이 피해자 및 그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 는 인식을 바탕에 둔 것이다[대법원 보도자료, “세월호 사건 재판 등에서의 재판 중계 관련 대법원규칙 개정” , 사법지원실(2014. 8. 6.), 2면].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제361조의5 제9호)를 항소이유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제38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되는 등, 공개재판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3)]

나. 재판중계에 관한 법규

대법원은 2013년 2월 28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개정(대법원규칙 제2456호, 시행 2013. 2. 28.)[4)]을 통해 제7조의2에서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는 “재판장은 방송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2013년 3월 21일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정에서의 공개변론을 국정방송인 KTV와 인터넷으로 중계방송[5)]한 바 있으며,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계방송을 실시해 오고 있다.[6)] 그러나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

---

3) 대법원은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4) 동 개정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공개변론 사건의 심리를 방송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지향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한 것이다(법제처 자료 참조).

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3175(2016. 7. 12. 접속). 다만, 당사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20분 지연해 방송하였다.

6) 기타 사례에 대해서는 노재선, “대법원에서의 변론 생중계에 관한 소고(小考)”,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36-138면 등 참조.

칙」에서 대법원의 심리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알권리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점에서 그 법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7)]

다.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와 재판중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제2조 제3호 가목 1))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동법에 근거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

여기서 '법원의 정보' 란 법원의 본질적 임무인 재판작용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작용에 관한 정보를 포괄한다. 다만,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은 재판작용이므로 재판공개는 재판작용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공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은 '문서와 이에 준하는 것' 이므로 이를 문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재판의 중계방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7) 따라서 대법원의 심리중계도 현재로서는 헌법상 공개재판의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법원조직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해석·적용될 때에 한하여 그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4호)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8] 따라서 오히려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판중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규에서는 재판공개 또는 재판중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규들은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알권리의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조직법상 '중계방송'의 표현도 알권리의 보장 요청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판중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공개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중계방송'을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양 개념은 동일한 표현이지만 그 내용은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9]

물론, 법원이 2017년 8월 4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촬영 등 행위의 대상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서 '판결 선고 시' (제1호)까지 확대한 것은 하급심 재판에 대하여 '심리과정'은 제외되지만 '판결선고과정'은 알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재판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동 규칙은 상위법

8)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9)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중계방송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인 헌법과 「법원조직법」의 위임에 따라 공개재판 원칙의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동 규칙을 현행법상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재판중계를 허용한 규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래 공개재판의 원칙은 '비밀심리주의' 내지 '밀행주의' 또는 '당사자공개주의' 에 대응하여 생겨난 것으로 법원의 심판절차를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보장해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개재판의 원칙을 피고인의 권리보호가 아닌,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판중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원칙이 발생한 연원이나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 원칙이 갖는 의미마저 상실시켜 버린다.[10]

이와 관련하여 재판공개의 의미에 대하여 애초의 공판과정 및 판결선고 방청의 자유보장이라는 소극적 협의의 내용을 넘어서 언론매체에 의한 재판정보의 대중전달이라는 적극적 광의의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고,[11] 공개재판주의가 초창기에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그 자의로부터 시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기여했던 반면, 오늘날에는 일반 국민의 정보이익에 보다 중점을 두고 간접공개[12]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13] 재판중계가 재판공개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다.

---

10) 박용철·최인화, "공개재판과 언론보도", 「동양문화연구」, Vol.11,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84, 8면; 이상돈,「형사소송원론 - 형사소송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법문사, 1998, 268-269면 참조.

11) 강구진,「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3, 326면 등

12) 직접공개는 일반 국민이 법원의 법정에 직접 참석하여 방청석에서 재판을 방청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간접공개는 TV중계나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법정 외에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재판절차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강동욱,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1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0, 223-226면).

13) 김재윤, "독일과 한국의 공개주의와 그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 298면.

그러나 공개재판의 원칙은 재판과정에서 사실 확정과 법률적용의 과정을 감시하고 그로써 법적 상황과 일치하는 결정을 보장하도록 기여함으로써 피고인이 부당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므로 재판의 공개에 의해 일반적 통제가능성하에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그 심리과정의 생생한 기록과 내용 그대로를 대중에게 전달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형식적 공개론).[14] 따라서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른 언론보도는 공판절차 및 판결의 기사적 간접보도를 의미하는 것에 그치고 중계방송을 통한 직접보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15] 설령 재판공개의 범주에 간접공개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간접공개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피고인이 부당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그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이것이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중계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16] 대법원규칙에서 촬영 등의 행위 대상을 '전 심리과정' 이 아니라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 과 '판결 선고 시' 로 제한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헌법상 공개재판의 원칙이 피고인의 기본권의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촬영 등의 행위가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14) 재판의 공개가 법관이 어떠한 증거에 기초하여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심증을 형성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방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공개를 의미한다고 하게 되면, 재판절차가 법관이 사실 관계에 대한 심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방청인 또는 시민들에게 사건을 이해시키고 법적용의 모든 내용을 확인시키는 절차로 되고, 이에 따라 법관은 소송당사자 보다는 방청인이나 시민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아닌 방청인이나 시민들을 위한 재판이 되어 여론에 의한 재판으로 전락할 우려마저도 배제하기 어렵다(강동욱, 앞의 논문(한양법학), 220면).

15) 김일수, "재판공개의 원칙", 「고시계」 Vol.29 No.4, 고시계사, 1984. 4, 150면. 자세한 것은 강동욱, 앞의 논문(한양법학), 218-220면, 224-226면.

16) 외국에서도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나 공개재판의 원칙에 재판중계를 포함시키는 형태의 헌법이나 헌법재판기관의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대법원규칙에서 재판장이 촬영 등의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재판공개를 통한 피고인 보호라고 하는 헌법의 이념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동 규칙에서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 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촬영 등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원조직법」에서 촬영 등의 행위에 있어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촬영 등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재판장에게 촬영 등의 행위에 관하여 제한 없는 허가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조직법」에서 촬영 등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 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른 재판공개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중계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알권리의 요청에 따른 재판중계에 관한 실정법 규정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규칙에서 대법원의 변론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법률' 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이 될 수도 있다.

Ⅲ. 재판중계방송 허용을 둘러싼 권리 논쟁

재판의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그 헌법적 근거로서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알권리'를 주장하고,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사생활보호'를 들고 있다.

1.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

알권리의 보장은 정부가 국가의 정치과정을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법원도 정부의 한 구성부분이며,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도 공무원으로서 헌법 제7조 제1항[17]의 적용대상이므로 사법작용은 당연히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알권리는 의견의 형성과 표현의 전제로서 기능하므로 그 전제로서 충분한 정보의 수령이 요구되고, 따라서 재판중계는 법정 밖의 일반 국민에게 재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알권리 실현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8]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알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재판중계를 허용하여야 하며, 정부의 다른 두 축인 행정부와 입법부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알권리를 위해 카메라의 접근을 허용하는 마당에 역시 정부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다.[19]

그러나 재판중계는 일반 국민들에게 재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17)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8) 손태규, "국민의 알권리와 법정 촬영 및 방송", 「공법연구」 제40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12, 33-34면.
19) 손태규, 앞의 논문, 34면 참조.

알권리의 실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중계로 인해 국가의 사법작용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 소송당사자의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공개까지 포함하게 되는 양면성을 가진다. 하지만 알권리는 일반 국민의 대국가적 기본권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이 다른 국민인 개인에게 사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까지 그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20]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중계가 알권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다. 즉, 중계대상인 재판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중계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함'과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알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유일한 것이거나 당위적인 것도 아니다.[21]

또한 헌법재판소는 알권리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 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해를 가진 자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가 사회적 관심사의 대상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설령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형사사건의 재판정보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정당한 이해를 가진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알권리에

20) 정보공개법에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제9조 제4호)는 원칙적으로 공개금지 대상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21) 현행법상 모든 사람에게 재판방청이 허용되고 있고, 재판에 대한 뉴스보도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원하는 사람에게는 판결문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만 국민참여재판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판중계가 없더라도 누구라도 충분히 재판내용을 알 수 있어 불가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노재선, 앞의 논문, 144면).

근거하여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개별 사건의 재판중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거나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재판중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재판중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 피고인의 사생활보호와 재판중계

사법기관은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재판이라고 하는 특수한 절차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우와 달리 헌법상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이라고 하는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법관을 비롯한 모든 소송참여자 중에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헌법상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가 추정(헌법 제27조 제4항)되므로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재판중계를 허용하게 될 경우 피고인은 물론이고,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초래될 수 있으며, 심지어 유죄자로 인식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22] 따라서 재판중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사안의 실체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 정보디지털화로 인해 디지털화 된 정보는 전파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넓은 만큼 단 한 번의 공개로도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23] 특히 그

22) 김재윤, 앞의 논문, 303면; 변종필, “공개주의와 공판의 의사소통구조”,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112면, 123면 등.
23) 이상원,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65-370면.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사후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잊혀질 권리'의 침해까지 야기함으로써 그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24]

뿐만 아니라 피고인 외에도 재판정에서 재판을 방청하고 있는 당해 사건의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나 일반 방청인도 재판중계로 인해 초상권 침해가 초래될 수 있으며,[25] 중계방송을 통해 피해자나 증인의 얼굴 등 신상이나 신문과정과 내용이 공개될 경우[26] 피고인이나 공범자 등에 의한 보복범죄의 피해가능성도 더욱 커지게 된다.

3. 기본권 충돌 시 재판중계의 정당성 여부

재판중계는 일반적으로 알권리와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헌법학에서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해결원칙으로서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원칙이 제시되고 있지만,[27]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하면서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킬 것인가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제한

---

24) 김소연, "재판 중계의 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2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70면.

25) 공개된 장소라고 해도 초상권자가 뉴스가치가 있는 공적 인물이 아닌 한 동의 없이 특정 개인이 부각되게 촬영 · 공포하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다(이재진 · 동세호, "방송 관련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나타난 '동의'의 적용 법리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5, 118면). 한편, 중계방송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우에는 어차피 재판절차라는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사생활의 일부 공개는 감수하여야 한다고 한다(김태형, "재판에 대한 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130호, 한국법학원, 2012, 157면).

26) 최근에는 피해자나 증인의 인격권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특정강력범죄(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1조 제6항)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또는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등의 경우에는 심리의 비공개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27) 성낙인, 『헌법학』(제16판), 법문사, 2016, 943면.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67 결정 등)와 대법원(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의 원칙・대안(절충안) 발견의 원칙 또는 규범조화의 원칙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대안해결방안・최후수단 억제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28] 특히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결부되는 권리이므로 사생활 보호와 충돌되는 경우에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보호가 충돌되는 경우의 해결이론이 그대로 원용된다고 한다.[29]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한다." [30]

그러나 재판중계와 관련하여 보면 알권리는 대국가적 기본권으로서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며 피고인 등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일반 국민을 위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본권을 내용으로 한다. 반면에 사생활 보호는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재판중계는 피고인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다른 인격권에 비해 우월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31]에서는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양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32] 특히 재판제도의 목적이 실체발견에 앞서서 적법절차에 따른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리와 관련하여 재판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여야 한다.[33] 더구

28) 성낙인, 앞의 책, 1249면.
29) 이에는 인격영역이론, 권리포기이론, 공공이익이론, 공적 인물이론, 공적 기록이론 등이 있다(성낙인, 앞의 책, 1249-1250면).
3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31) 이재진・동세호, 앞의 논문, 2015, 115면.
32) 박용철・최인화, 앞의 논문, 8면; 이상돈, 앞의 책, 268-269면 참조.
33) 김소연, 앞의 논문, 266면.

나 알권리의 보장이 사법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법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에 양보될 수밖에 없다.[34]

따라서 재판중계는 대립하는 이익들, 즉 피고인 등의 사생활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보장 및 방송의 자유와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이익들을 비교 형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훨씬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 등에 의해 사생활 침해나 사법목적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법률'로서 그 대상과 요건 및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와 사법정의 훼손을 최소화 할 것이 요청된다.

Ⅳ. 재판중계방송 허용이 '사법신뢰 회복'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기능

재판중계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재판중계로 심리과정이 공개될 경우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사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로 인하여 사법부가 청렴하고 합리적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며,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35]

---

34) 미국의 형사절차에서는 철저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고, 변호인 조력권이 잘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와 달리 피고인 신문이 허용되지 않고, 배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언론으로부터 차단되어 비공개로 평결을 하므로 여론으로부터 차단되어 여론의 영향이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우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중계방송이 허용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여론에 의한 재판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중계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 법제의 마련을 위한 사례로서 참고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35) 전술「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개정 이유 참조. 손태규, 앞의 논문, 34면에서는 실제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이 중계될 경우 시민에 의한 감시나 비판을 의식하여 재판장을 비롯한 소송당사자가 소송사건에 대한 준비와 심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한다.[36] 나아가 재판중계를 통해 국민의 법의식과 지식이 고양될 수 있고, 법학자나 법학도 및 변호사들이 방송이나 녹화 테이프를 통해 재판과 관여자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법원 또한 당해 사안에 대해 국민적 정서나 사회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37], 따라서 재판중계가 일반시민의 법의 준수 및 법규범의 실현으로 연결되어 국가공동체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38]고 주장한다.[39]

2. 부정적 기능

재판중계가 반드시 사법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즉, 재판중계로 인해 재판이 희화화될 우려가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과정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는 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40] 재판장을 비롯한 법관들까지 중계방송을 의식하여 인기영합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중될

장 직접의 방법이기 때문에 법정의 텔레비전 방송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견제 장치가 된다고 한다.

36) 미국의 변호사인 애브람스(Floyd Abrams)는 법정 내의 카메라는 "부패한 검사, 지나치게 판사에 밀착된 변호사 또는 졸고 있는 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손태규, 앞의 논문, 38면).

37) 손태규, 앞의 논문, 36면 참조.

38) 김소연, 앞의 논문, 269면; 조규범, "재판방송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입법학연구」, 통권 제10집 제2호, 한국입법학회, 2013, 220-222면; 한동섭・김형일, "재판중계의 법적 쟁점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60-64면 등 참조.

39) 이외에도 재판공개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얼굴과 신원이 공개되고, 법집행과정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한다.

40) 손태규, 앞의 논문, 35-36면 참조.

수 있다. 또 법관이 재판중계를 의식하여 사건의 실체 보다는 재판진행 등 절차적 측면에 집중하게 되고,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의 반응이나 영향을 의식하여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사법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41] 법관이 중계를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법관의 직권적 개입을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42]

뿐만 아니라 재판중계를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하기는 쉽지 않고, 따라서 법관의 재판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비난을 가져오는데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43] 시민에 의한 사법감시기능 또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법관이 재판중계를 의식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여론에 따른 재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법에 대한 신뢰를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44]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1항)를 침해하게 되고, 법원의 재판이 사회적 충돌과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45]

---

41) 공개주의로 인해 법원이 일반에 만연된 선판단과 기대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변종필, 앞의 논문, 111면).

42) 이에 대하여 재판에 관한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는 중계방송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만으로도 형성·변화·작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재판중계의 문제점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자질·자격의 문제나 법관에 대한 교육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현장 중계방송은 사후의 언론보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청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법관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반 시민의 비판이나 비난이 거의 테러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재판중계로 인한 법관의 부담을 모두 법관의 자질이나 자격의 문제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지나친 기대이므로 그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43) 김재윤, 앞의 논문, 303면; 변종필, 앞의 논문, 112면.

44) 노재선, 앞의 논문, 143면. 재판의 중계방송은 법관들의 초상이 공개되기에(변론 생중계가 1심과 2심까지 확대될 시에는 배심원도 포함) 이에 부담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재판하게 될 소지가 더욱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144면).

45) 재판중계를 통해 범죄수법이나 범행과정이 그대로 노출될 경우 모방범죄를 양산할 수 있고, 오히려 범죄자를 영웅화할 우려마저 있다.

더구나 재판중계에 있어서 전문가나 방송인에 의한 해설이 첨가될 경우 일방적인 의견 또는 왜곡된 판단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우려도 적지 않고, 방송사의 선별적 중계로 인해 법집행의 차별화와 사건 왜곡의 우려마저 있다. 특히 방송사들이 재판과정의 일부만을 방송하거나 편집방송하는 경우는 물론, 반복 방송을 하거나 여러 방송사에서 중복 방송하게 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46]

3. 소결

재판중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재판은 공개된 이벤트이므로 누구나 원하면 다른 사람의 재판을 방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는 재판방송을 불허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으며, 재판방송은 단지 양적 관람객의 증대를 의미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로 언론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들이나 방청객들도 마음만 먹으면 법정 내에 몰래 반입한 초소형 카메라나 소지한 스마트폰 등으로 재판과정을 쉽게 녹음·녹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언론의 방송취재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방송기자의 취재방법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의 난립으로 그 폐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47] 또한 일반 개인들이 몰래 촬영한 재판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게 편집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유포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합법적인 재판중계에

46) 시국사건이나 이념적인 논쟁이 큰 사건, 사회적 대립이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 중계함에 있어서 PD 등이 특정가치관이나 신념에 집착하거나 상업성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시민 등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막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47) 김태형, 앞의 논문, 154-155면.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48]

그러나 재판중계 자체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는 훨씬 심각할 수 있고, 언론의 흥미위주나 선정성 보도로 인하여 이러한 위험성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49] 나아가 재판중계로 인해 피고인의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사회복귀가 어렵게 될 수 있고, 따라서 영원히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회복은 법치사회의 구현은 물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사법의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하여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되거나 사법의 본질인 실체적 진실발견이 경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Ⅴ.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급심에서의 형사재판의 중계는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해칠 수 있고, 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재판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판중계가 알권리의 보장과 사법에 대한 신뢰확보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법제와 장치를 통해 재판중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전문법관의 자질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논리에 따르더라도 알권리에 따른 재판중계는 법리

48) 김소연, 앞의 논문, 285-287면; 조규범, 앞의 논문, 235면 등.
49) 송희진, “형사재판에서의 공개주의”,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2권, 연세법학연구회, 2001, 116면.

적 정당성도 충분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기능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재판중계가 설령 사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는 면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장치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법원의 일부 형사사건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태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재판중계가 가져 올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는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50]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정의 실현과 더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고인의 보호라고 할 것이므로 알권리의 보장과 사법신뢰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재판중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50)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위험 수준에 이르러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은 다반사이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http://news.joins.com/article/21994433 참조).

[세션 1] 토론

지정토론문

권 혁 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정 문 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션 1]
지정토론 1

지정토론문

권 혁 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최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사회적 영향이 큰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 재판도 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외국 선진국들처럼 재판 중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 주요 선진국들은 사법신뢰 제고를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워싱턴 D.C를 제외한 50개 주(州) 법원에서 하급심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하고 있고, 연방대법원은 2010년부터 재판중계 방송 대신 모든 사건에 대한 녹음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1992년부터 재판중계방송이 허용된 반면,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2011년 9월 법무부의 법 개정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판과정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 2009년 10월 1일 신설된 영국 대법원은 일정한 규칙(법원 소유의 장비로 녹화 및 녹음, 모든 녹화물을 오락 프로그램, 광고 등을 제외한 뉴스,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사용 가능. 판사·변호인 등의 법정 내 사적 대화 녹음·촬영 금지. 공개되지 않은 재판관 자리의 서류 클로즈업 금지. 방청객 클로즈업 금지 등) 하에 생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81년부터, 뉴질랜드는 1999년부터 재판중계방송이 허용되고 있고, 캐나다는 1981년부터 대법원의 재판중계 방송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영미법계의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는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음성 및 영상기록을 남길 수는 있지만 이를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재판중의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독일 역시 녹음이나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연방헌법재판소만이 제한적(당사자의 출석 확인 때까지, 선고 시)으로 재판에 대한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지난해 10월 법률 개정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특수한 판결 선고에 대해서는 TV 중계방송과 녹음·녹화를 방영해 공개하도록 허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학문적·역사적 목적을 위해 심리 및 판결 선고의 녹음·녹화를 법원이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심리 진행 중 녹음·촬영은 물론 재판중계방송도 당사자들 간 합의가 있거나 현저히 중요한 공익이 존재하는 때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원칙적으로 재판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등 대륙법계의 국가들 역시 점차 재판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올 8월에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 등 공익이 큰 중대사건 재판의 중계방송에 응답자의 84%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올 6월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판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2심 주요 사건의 재판과정 일부·전부 중계방송을 재판장 허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응답한 판사는 67.82%(687명), 재판중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32.1%였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판결 선고만큼은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은 이보다 더 많은 73.35%(743

명)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들이나 재판을 직접 주재하는 판사들 역시 재판중계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렇듯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다수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생활보장·초상권 등은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보장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이익들을 비교 형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훨씬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 등에 의해 사생활 침해나 사법목적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그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야 한다' 고 하신 말씀에 저 역시 전적으로 같은 의견임을 밝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발표자의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발표문 12페이지에서, "대법원 규칙이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촬영 등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원조직법에서 촬영 등의 행위에 있어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촬영 등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재판장에게 촬영 등의 행위에 관하여 제한 없는 허가권을 부여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조직법에서 촬영 등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 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안전보장 등 더 큰 공적 이익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취지에 의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사생활비밀, 초상권 등의 권리는 재판장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고 하여 재판장의 중계방송 허가에 대한 아무런 제약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규정을 '피고인의 동의' 또는 '공공의 이익' 이라는 요건 하에서만

재판장이 재판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오히려 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하는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 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션 1]
지정토론 2

지정토론문

정 문 식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헌법적 측면에서 제기된 개별적 주장과 관련하여

1. 법률유보 · 위임입법원칙 위반?

재판중계방송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이하 '변론규칙' 제7조의2(변론에 대한 방송 등)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Ⅱ. 1. 라. 후반부), 대법원의 규칙제정 권한 자체에 대한 의문보다 '재판중계방송을 통해서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는 전제 하에서 기본권 제한의 원리 측면(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헌법 제108조) 제정할 수 있으므로 재판중계방송이 대법원규칙으로 제정된 것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적고,[1] 재판중계방송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다. 기본권 제한 이론과 관련해서도 법률유보, 위임입법원칙이라는 형식적인 요건보다,[2] 구체적인 기본권 제한에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비례원칙)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

1)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대한 헌법해석상 문제에 대해서는 양건, 『헌법강의』, 2016, 1259면 참조. 물론 발제문의 주장대로(각주 7) 법원조직법 등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면 재판중계의 헌법적 정당성이 명확해지고 제고되는 효과는 거둘 수 있다.

2) 대법원 규칙의 경우에도 위임입법원칙(포괄위임금지)이 준수되어야 하지만, 대법원 규칙에 위임된 내용은 주로 소송에 관한 절차 등 법원의 전문적 · 기술적 사무에 해당하여 위헌심사 기준은 완화될 수 있다. 헌재 2016. 6. 30. 2013헌바27, 공237, 1024(1026).

2. 재판중계는 알권리의 보장에만(!) 근거?

재판중계방송의 근거를 국민의 일반적인 알권리에만 (중점적인) 근거를 두는 듯한 서술은(Ⅱ. 1. 라. 전반부) 헌법적 이익의 형량을 상당히 좁게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중계는 헌법 제10조 또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제로서 국민의 알권리 외에도,[3]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보장되는 헌법 제109조의 공개재판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원의 물적 시설이 가지는 공간적 한계를 시청각적인 정보의 제공을 통해 확장하려는 것이기도 하며, 표현의 자유(특히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 내용이기도 하다.[4]

Ⅱ. 재판중계방송에 대한 합헌적 해석 가능성

1. 대법원 변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

변론규칙은 일반 법원의 재판중계방송을 규율한 것이 아니라 법률심으로서 "대법원 변론"에 대해 규율한 것이며, 이 때문에 실제 피고인의 사생활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클 것인지는 의문이다. 대법원 재판을 단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론과정이 사실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달리 평가될 수 있지만, 이 때 개인의 기본권이 문제될 수 있는 대상자는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소송에서 당사자와 법관징계사건에서의 당사자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당사자의 사생활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지

3) BVerfG, NJW 2001, S.1633(1634).
4) Richmond Newspaper Inc. v. Virginia, 448 U.S. 580(1980). Rüdiger Zuck, Court TV: Das will ich seheh!, NJW, 1995, S.2082f.

의문이며, 변론규칙 제7조의2 제3항은 이를 대비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일반 재판에서의 재판중계방송

원칙적으로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법원조직법」제59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촬영규칙’) 제5조에서는 재판장이 촬영 등을 허가할 때에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 이나 “판결 선고 시” 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제1항 제1호). 즉, 공공의 이익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변론개시 전과 판결선고 시에만 가능한 것이지, 변론 전 과정은 아직 촬영대상이 아닌 것이다.

또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항). 이는 현재 재판중계방송 제도가 원칙적으로 재판당사자의 기본권(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공익 때문에 재판과정의 일부를 촬영하게 되더라도, 촬영규칙은 재판장에게 혹시라도 제한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기본권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비례원칙 심사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Ⅲ. 재판중계방송에 대한 평가와 고려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들

헌법 제109조의 공개재판의 원리에 따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의 제한 가능성이 적은 판결선고 시까지 재판방송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보면 설득력이 적다. 그 밖에도 수많은 피해자와 관련자가 연루되어 사실상 재판당사자가 너무 많아서 재판정에 입실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 역사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의미가 중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재판의 경우 등, 실제 공익과 관련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재판에 대해 기자들이나 속기록만을 통한 간접공개가 전체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하나의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할 때는 세심한 주의와 숙려가 필요하다. 헌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전통적인 공개재판원칙 외에도, 방송의 자유뿐만 아니라 알권리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개별적으로 관련 이익을 형량하는 것이 필요하지, 어떤 한 가지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를 형식적으로 압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변론규칙과 촬영규칙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재판방송의 공개대상 측면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민·형사 재판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적 이익의 제한이 가장 적고 공적 이익이 큰 대법원 변론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변론규칙 개정 이후 4년 만에 일반 재판으로 재판방송의 공개대상을 확대했지만, 변론과정이 아닌 변

론개시 전과 판결선고 시만으로 그 공개범위를 제한한 점에서 적합하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규정들을 둔 점에서 적합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생활 - 정확하게는 개인정보 - 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사회화의 보장을 지지하는 발표문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결코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규칙상으로는 O.J. Simpson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소동?) 장면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마지막으로 재판방송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조문과 논의를 참고하고 싶다면, 그 동안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온 - 물론 헌법재판소 판결선고에 대해서는 생방송을 종종 볼 수 있지만 - 독일의 경우[5] 지난 10월 18일 공표되고(BGBl I Nr.68) 2018년 4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법원절차법(GVG) 제169조의 개정도[6]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현재 법원절차법 제169조 : 판결과 결정의 선고를 포함하여 법원재판은 공개한다. 재판내용의 방송과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TV・라디오의 촬영과 영상녹화, 음향녹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6) 2018년 4월 18일부터 발효될 법원절차법 제169조 : (1) 판결과 결정의 선고를 포함하여 법원재판은 공개한다. 재판내용의 방송과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TV・라디오의 촬영과 영상녹화, 음향녹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문, 라디오, TV 또는 그 밖에 언론보도인들을 위한 공간에 음향을 전송하는 것은 법원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음향의 전송은 재판당사자, 제3자의 보호할 만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언론인들을 위한 음향 전송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판결과 결정의 선고를 포함하여 재판의 녹음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중대한 시대적(herausragender zeitgeschichtlicher)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학문적・역사기록(historisch) 목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재판의 녹음은 재판당사자, 제3자의 보호할 만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녹음은 문서화할 수 없고, 편집되어서도 안 되며, 다른 절차에 이용하거나 반영할 목적으로 녹음되어서도 안 된다. 법원은 재판종료 후 관할 연방이나 주기록물관리청(Bundes- oder Landesarchiv)에 재판의 녹음자료를 제공하고, 관할 기록물관리청은 연방기록물법 또는 주기록물법에 따라 보관가치(bleibender Wert)가 있는지 확정해야 한다. 연방기록물관리청이나 주기록물관리청이 녹음자료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녹음자료를 말소한다. (3) 제1항 제2문과 달리, 연방대법원(BGH)의 판결선고 시 특별한 경우에 법원은 재판내용의 공적인 방송과 공개를 위하여 TV・라디오의 방송촬영과 영상녹화를 허용할 수 있다. 재판의 녹화와 방송은 재판당사자, 제3자의 보호할 만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거부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

[세션 2] 주제발표

사법보도를 둘러싼 법익충돌

-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장 철 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사법보도를 둘러 싼 법익충돌

-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장 철 준(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서론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극심한 경쟁 환경에 처한 언론사들은 저마다 사건보도를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적잖은 실무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공인과 사인을 막론하고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기자는 늘 나중의 송사를 걱정하며 기사를 쓰게 된다. 기사를 편집하는 데스크 또한 기자의 수세적 태도 강화에 일조하는 주역이다. 회사 전체의 역량이 소모되는 소송을 각오하고 써야 할 만큼 중요한 기사가 아니라면, 가급적 안전한 보도의 선택지를 집어 드는 것이다. 언론사가 직면하는 소송의 대부분은 명예훼손에 관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가 보도 대상이 입을 명예를 비롯한 각종 손해를 고려하며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일견 바람직한 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상대의 인격을 침해할 기사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기자 이전에 시민으로서의 덕성에 관한 문제인지도 모른다. 이 덕목을 결여한 기사에서 우리는 '악의적' 의도를 발견한다.

하지만 언론에게 인격 침해를 조심하라는 도덕적 명제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 진실을 보도할 사명으로 태어난 언론의 존재 이유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형사사건의 외양만을 건조하게 전달하는 수단은 법원과 검찰의 공식 브리핑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언론에게 사건 이면에 존

재하는 사회적 의미를 파헤쳐달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탐사' 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역사 서술에서 엿보듯이, 사건이란 기술하는 주체와 받아들이는 독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전제 위에서 보면, 이제 사실과 의견에 대한 검증과 판단을 두고 합리적인 논증의 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남는다. 보도를 수용하는 이름 없는 독자들이 손쉽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비판할 플랫폼이 드디어 마련된 현재의 정보기술 환경은 어떤 의미에서 큰 축복이다. 비록 이 와중에 가짜뉴스가 활보하고는 있지만, 보도에 대한 역동적 의사교환은 시민과 언론을 동시에 깨우는 진실 발견과 계몽의 기회임에 틀림없다.

국정농단에서 촉발된 정권의 비상적 몰락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적폐(積幣)" 라는 용어로 상징되는 지점을 두고 이념과 관점의 강한 대립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이러한 충돌 양상은 그 청산 작업 와중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적폐에 대한 인식과 극복 과정이 언론의 적극적 보도와 시민의 자발적 행동에 의하여 촉발되었지만, 그 실행이 철저히 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민의 민주적 열망을 법치의 형식으로 승화시킨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자연히 사법부는 민주적 정의를 실현할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많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그 헌법적 역할을 강력히 각인시켰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고조된 상황에서 국정농단의 잔재에 대한 사법처리의 방식과 수준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시민들의 법적 판단과 사법부의 재판 결과 간에 상당한 간극이 발생하

면서, 일부 법원 구성원들을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언론 보도의 역할이 컸다. 언론을 통해 재판에 제출된 증거 못지않은 수준의 사실관계를 접함으로써, 시민들은 줄 이은 재판에서 나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언론의 사실 보도와 의혹 제기에 의존하였을 때 도출할 수 있는 법적 판단과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관의 사법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시민의 오랜 불만 속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헌법 질서 속의 사법 체계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 판단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은 사회 전반의 적폐청산 작업과 맞물리면서 사법개혁의 화두와 함께 진행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 또한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의 적극적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언론 보도의 인격권 침해 위험은 사법 판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의 맥락에서 이제 사법 불신과 법관에 대한 명예훼손 논쟁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법부는 언론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실 보도에 힘쓰고 공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언론은 시민의 법적 기대와 어긋난 판결을 수행한 법관이 누구인지, 왜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등을 보도하는 것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의 사명으로 이해한다. 그 와중에 판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의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과연 언론의 사법보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사법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는 결국 사법(司法)의 본질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통해 언론의 권리와 의무, 그 역할은 오래 연구되었으나 헌법질서 속 사법의 본질은 사법부를 기록한 헌법규정의 해석 수준 이상을 벗어

나지 못하였다. 특히 '민주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사법 영역은 '법치'를 그 이상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그 '민주적' 의미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언론과 사법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헌법에서 사법의 좌표를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 이 작업은 언론을 대하는 사법권력 주체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는 데 공헌할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의 균형적 해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언론의 사법보도 현실과 명예훼손

1. 사법에 대한 언론보도와 여론의 관심

민주화 이후 헌정 역사에서 지금처럼 사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지극히 정치적 사건을, 민주주의의 제도적 수단이 아닌 사법 과정을 통해 이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태의 정치적 파급력은 매우 커서, 적폐에 대한 청산 담론을 통해 사회 곳곳의 구습에 대한 개선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치의 안정적 작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진보를 이루어냈다는 시민적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점은, 이번 모든 과정이 정치를 지도하는 엘리트 계층의 일회성 업적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의 집단적 참여를 통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1]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의 적극적

1) 비슷한 취지의 기사로 국민일보, [촛불집회 1주년] "수동적 국민에서 적극적 시민으로: 헌법・정치・사회학자들이 본 촛불 1년", 2017. 10. 28. 참조.<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39069&code=11131100&cp=nv>(2017.10.28. 방문). 87년 6월 항쟁의 민주적 동력이 대표자들의 정치회담 등을 통한 개헌 합의의 결과물을 기점으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급속히 사그라든 역사와 사뭇 대비되는 대목이다.

보도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교환 및 의사표현 수단을 확보한 시민적 힘의 확대를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탄핵의 시작부터 언론은 사실에 기초한 의혹 제기와 정치적 평가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결정적 동기를 충실히 제공하였으며, 시민들은 특정 세력의 조직적 지도가 아닌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움직였다. 시민의 민주적 행동을 이끌었던 여론이 형성되기 위하여 정권의 폐습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당연히 전제된다. 비판에 의한 의기의 결집이 없었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에 봉사하는 표현의 자유의 고전적 기능이 사실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2] 이런 의미에서 국가에 대한 언론기관 및 시민의 비판은 특별히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국가는 무형의 권력 집합체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권력을 직접 실행하는 모든 제도와 대표여야 한다. 선출된 권력은 물론, 그 권력에 의해 구성된 권력 또한 비판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시민들은 헌법이 설계한 사법 시스템을 통하여 민주적 정치발전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매디슨 민주주의(Madisonian Model)의 기본 형태, 즉 사법권을 포함한 분립된 권력의 역동적 상호작용은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당연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정의 역사에서 이 경험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우리도 선진 입헌민주국 반열에 올랐다는 시민적 감격은 이제 다른 어떤 국가권력·정치주체보다도 사법기관에 대한 기대로 향하였다. 사법행정주체와 법관의 재판 행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무명의 검찰·법관에 의한 재판 결과에만 집중하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권 행사 과정 전반에 걸쳐 그 주체와 판단의 근거, 논변까지도 챙겨보기 시작한

2) Thomas Emerson,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Random House, 1970.

것이다. 사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한 언론이 보도의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론은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누구이며 어떠한 결정을 하였는지, 정부와 법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앞 다투어 상세히 전달해주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이러한 여론의 관심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언론의 비판적 관심은 '무관심' 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는 인식에서 몇몇 정치인들은 일부러 다수 대중의 의사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민주공화국 헌법기관에 전제되는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사법 권력에 대한 지금의 대중적 관심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우리의 검찰, 법원이 선거와는 무관한 제도를 택하고 있다 하여 사법 권력이 국민의 지지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국민적 호응을 결여한 사법 판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신뢰받지 못한 사법은 언제든 교체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 사법은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비판에 무척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특히 재판 내용과 법관 개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극도의 경계를 표명하고 있다.[3] 사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판에는 응원과 쓴 소리가 공존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불편한 내색은 주로 그 비판 내용에 향해 있다. 판결을 내린 개별 법관에 대한 보도에는 강하게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법부의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

3) 법의 날, 대법원장은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끼리 이념적으로 충돌하거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 면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며 재판 독립에 대하여도 심각한 위협" 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부당한 위협에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고 당부했다.」 서울신문, 양승태, "도넘은 판결비판...재판독립 위협" , 2017. 9. 1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14008013> (2017.10.28. 방문).

도·형태의 관심과 비판을 이전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고 걱정하는 심정이 당연히 생겨날 것이다. 만일 사법부와 일각의 주장과 같이 언론과 여론의 관심·비판이 재판 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만큼의 물리적 위협으로 형성된다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불상사에 대비하여 법원의 경비를 강화하고 법관 개인에 대한 신변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개별 사법주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무력하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관련 법 적용 대상이 된다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하여야 한다.

관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법 권력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이 정도의 수위에 도달하였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법관 개인에 대한 실질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가할 수 없다. 시민의 관심과 비판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혹시나 우리 사법부가 시민적 관심과 비판을 스스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중적 비판에서 자유로웠던 사법주체들이 사법의 민주적 본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는 이미 부끄러운 정도로 추락해 있는 국민의 사법신뢰도에 대한 사법부 스스로의 자성의 의미를 겸하는 일이다.[4)]

2. 법관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법관에 대한 비판은 특히 국정농단 사태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적폐청산이라는 민주적 열망이 워낙 강하게 드러나는 대상

4) 2015년 OECD의 사법기관에 대한 각국의 신뢰도 비교 결과에 의하면 우리는 여전히 3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인 50%대와 비교하더라도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2017년 자료에는 무슨 이유인지 통계에서 아예 빠져있다.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p.171. <http://www.oecd.org/gov/govataglance.htm> (2017. 10. 28. 방문)

이다 보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을 수행한 주체에 대해 분개하는 일이 잦다. 농단의 주역이라 의심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5] 언론에서 법관 개인의 배경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일반 독자들의 비판 의견이 표출되는데, 여기에는 비속어를 섞은 무분별한 비난 또한 뒤따르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사에 더하여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거짓 정보를 가미한 가짜뉴스가 유통된다는 점이다. 특정 법관의 과거 행적에 대한 거짓 정보가 비난거리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비판 대상이 된 법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이는 참 억울한 일이다. 자신이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치인도 아닐뿐더러,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기초하여 판결하였음에도 법적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부당하다 여길 것이다. 명예훼손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통해 형벌을 내리게 하거나 훼손된 감정을 보상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법관은 공적 인물(public figure)에 해당한다. 비록 우리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겠노라 선언하였지만,[6] 이후 여러 상·하급심 판례를 통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명예훼손 인정 기준을 확립해가고 있다.[7] 그러나 법원의 법리와 별개로 공인이 실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상

---

5) 예를 들어 MBN, 판사 '신상털기' 부터 가짜뉴스까지... 조윤선 판결 비난 폭주, 2017. 7. 29.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297905> (2017. 10. 28. 방문)
헤럴드경제, "74년생, 고대법대 93학번…" '朴 담당' 강부영 판사 신상털기 또 극성, 2017. 3. 2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27000933> (2017. 10. 28. 방문)
세계일보, [이슈탐색] 어제는 조의연, 오늘은 성창호… '신상털기' 에 뿔난 법원, 2017. 1. 20. <http://www.segye.com/newsView/20170120003358> (2017. 10. 28. 방문) 등 기사 참조.

6)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7) 대표적으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당하다는 통계적 사실에 의존한다면,[8] 법관이 본격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에 나섰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표현이 법정에서의 명예훼손 법리다툼으로 환원되고 말 것이다. 관심과 비판의 원인은 퇴색하고 사법부와 시민의 대결 양상만 부각될 위험이 있다. 물론 부당하게 침해된 명예에 대한 회복의 절차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사태의 최종 해결책으로 인식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명예훼손과 알권리의 경쟁구도는 개별 사건의 해결 방책은 될 수 있겠지만 결코 사법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열망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다.

언론 보도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법원 또한 그 자신이 진실 발견 과정의 고전적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했으면 한다. 규범 해석과 판단 기관으로서의 기능 때문에 자칫 진실에 대한 '최종' 판단의 의무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적어도 언론소송에서만큼은 심사기준의 법리적 도그마틱에 얽매인 판단보다 논증과 논변의 과정에 중점을 두는 소송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확립한 판단 기준의 유형은 매우 분석적이고 치밀하다. 이러한 판단 구조의 기초 위에서 누가 더욱 설득적인 논변을 수행하였는지를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인격과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논증의 구조를 설정하는 절차 또한 신중하게 구상되어야 한다. 오래되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즈 판결은 공적 인물에 관한 언론

8) 2016년 법원에 제기된 전체 명예훼손 소송 중 공적 인물에 의해 제기된 사건은 29.5%에 달하며 이들의 승소율은 50%에 이르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7.

소송에서 언론사의 법정 논증에 역사적 이정표를 제시한 사건이었다.[9] 이 사건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결정이 단순한 소송 절차의 형식을 정하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 것은, 언론사의 논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외려 장려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언론소송에서 논증 과정을 판결의 중대한 절차적 전제로 인정하는 증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관이 지극히 공적 장소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에게 뒤따르는 비판은 판사라는 지위를 가진 시민에 대한 명예 문제에 불과하며, 사법권 행사자로서의 법관에 대한 명예훼손 구도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는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루는 것이지만, 모든 권력의 최종적 담지자이자 행사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국민이 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물리적으로 재판에 대한 위협에 달할 정도인지를 엄격히 살펴 규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짜뉴스와 프라이버시 침해는 명예훼손과 별개로 다루어 엄격히 규율하면 될 뿐이다.

3. 소위 '판사 신상털기' 문제

인터넷 시대에 대표적 폐해로 지적되는 소위 '신상털기'는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한 수사(修辭)이다. 개별 법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범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이렇듯 좋지 않은 꼬리표가 붙게 된 데는 무언가 의도된 바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공개된 재판에서 공적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시민

9)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1964).

으로서 자연스런 감정이다. 그 재판이 개별 시민의 민주주의의 공적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인 경우, 그 소망은 커질 수 있다. 내가 직접 참가하는 재판은 아니지만, 민주 사회에서 공적 파급력이 있는 재판에 대해 시민들은 자신의 재판으로 인식한다. 정의에 대한 인간 본연의 열망인 것이다.

오랜 폐쇄적 사법 구조에 길들여진 탓인지, 우리의 인식 속에 법관은 그 신원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인물로 각인되어 있다. '이름 없는' 법관만이 재판 외적 환경에 영향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법원은 공중에 열린 공적 포럼이며 그 안에서의 판단은 모두가 보고 듣고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공개재판주의를 천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제109조).

입헌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 및 행정 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시민이 모르는 대표는 없다. 우리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국가행정 및 지역 행정의 책임자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사법만은 예외이다. 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법 판단의 주체, 국가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 판단을 하는 주체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베일 속에 있어야 공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가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고 어떠한 인생 경로를 겪었는지 알고자 하면 신상털기의 오명을 감수해야 한다. 검찰이나 법관이 선출되지 않는다는 경로 상의 한계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선거로 뽑히지 않았다고 하여 선출된 법관과 하는 일이 다른 것은 아니다. 개인의 기본권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 행사 주체로서 법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Ⅲ.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

1. 사법권 독립의 법정치학

법관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재판 외적 위험으로부터 법관을 지킬 수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사법권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 테제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수호되었던 논리이다. 아직까지 우리 학계와 법조에서도 여전히 주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법권 독립의 논리는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라면 함부로 반박할 수 없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권위주의 헌정을 겪으면서 행정권력에 의한 사법권 훼손을 몸소 체험하였던 우리에게는 더 큰 전제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 논리는 이제 헌법 시스템 속에서 거대규범(grand theory)화 되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힘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규범적 고정관념을 법적 도그마틱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한 사법 권력의 본질에 대한 그 어떤 진전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오는 사법권력 지형을 고려한다면, 이제 논리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 거대담론 이면에 숨겨진 체제유지적 반작용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사법 권력의 중립성테제(neutrality principle)에 대한 법현실주의(legal realism)의 비판을 시작으로 세기 후반 비판법학운동(critical legal theories)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되었다. 판사가 가지는

중립성은 신화(myth)일 뿐, 누구도 이념과 환경의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히려 중립성 원리는 사회변동을 가로막는 보수적 사법판결을 정당화하는 가림막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거창한 이론을 배경에 두지 않더라도 상식적 견지에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조명해본다면 법관의 정체성 공개와 사법권 독립이 무관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판사 1인(혹은 3인, 혹은 9인, 혹은 12인)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영미의 배심제 구조에서는 주장 인용·거부의 판단 권한을 배심에 위임하고 법관은 증거 채택을 위한 재판의 진행과 양형의 책임을 분담한다. 배심원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정보를 모두 차단한 채 오직 재판의 판결을 위한 숙의에 전념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법관이 재판에 대한 최종적·독자적 권한을 확보한 채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다. 재판 과정의 가장 중요한 권한을, 거의 절대적 책임의 권한을 지닌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차단되어야 하는가? 직무와 관련된 법관의 과거 행적과 판결 성향을 알고 현재의 판결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 과연 현재의 재판 시스템을 무너뜨릴 정도의 부당한 접근으로 보아야 하는가?

최근 일어나는 법관에 대한 비판에는 이러한 맥락의 전복적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가짜뉴스를 제외하고 판사 개인과 재판에 대한 정보를 언론기관이 보도한다고 하여 재판에 대한 법관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다. 재판의 체계가 유지되고 그것이 흔들릴 위험이 없다면, 비판은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시민은 판결 내용과 논거를 두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할 뿐더러 재판 자체에도 그 발전을 위하여 이로운 일이다. 재판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법관을 믿고 조용히 입을 닫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위하여,

중립적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논거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시민의 이성에서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은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 침해 가능성은 비단 기본권 주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내가 언제 법정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법권 독립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체는 시민의 비판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행동이다. 현직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판사 개인을 비판하고 있다. 200년이 넘는 미국 헌정사를 통해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 본질적 성격은 정치적(political, 정파적 partisan이 아님)인 것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10] 그러나 의회나 행정부로부터의 사법부에 대한 그 모든 정치적 공격은 실패하였는데, 거기에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국민적 믿음, 헌법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경계하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 주체를 명확히 하자. 언론의 법관 및 재판보도가 그것인가, 정치적 의도의 비판이 그것인가? 언론 보도와 법관에 대한 시민적 비판 속에 사법권 독립 훼손의 징후가 보이는가? 그 비판들 속에서 헌법이 정하는 사법권 독립이 위협하겠다는 국민적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사법을 더욱 건실하게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신상털기의 멍에를 씌우기보다 오히려 시민을 사법 판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장으로 초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

10) Barry Friedman, Attacks on Judges: Why They Fail, in (Elliot Slotnick ed.) Judicial Politics: Readings from Judicature, AJS, 1999, p.637.

2. 여론과 법원의 재판

법관도 시민인 까닭에 시간적 간격은 존재하지만 결국 사법 판단 또한 여론의 판단과 합일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1] 법원은 사회변동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 사회변동은 입법과 시민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결과도 있다.[12]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 역사를 보더라도 드문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랜 시간과 과정을 거친 끝에 결국 사회 일반의 의사와 합일되는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13] 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무조건 배척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14] 재판 내용을 장기적으로 보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민주사회의 법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법원이 주장하는 법리와 여론의 괴리가 큰 경우 여론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언론사의 주장에 대한 개별 논변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헌법적 차원에서 법관이 판결의 결과를 예상해 보는 것도 합리적 판단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개별 사건에서 언론사에 내린 유·불리의 판결 결과가 우리 헌법의 목적에 봉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특히 언론의 존재 목적이 시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면, 과연 해당 언론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로 그 민주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이는 언론사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판결을 해달라는 뜻이 아

11) Friedman, id., p.641.
12) Gerald Rosenberg, The Hollow Hope: Can Courts Bring about Social Chan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13) 예컨대 4번의 합헌결정 이후에 등장한 간통죄 폐지 결정.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판례집 27-1상, 20.
14) 이는 소위 여론재판을 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니다. 악의적 거짓보도에 적절한 조치를 가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더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요컨대 언론에 대한 사법판단은 “그 어떤 판단 요소를 배제한 채 오로지 법에 근거한 판단”이어야 한다는 구호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판결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는 서술이 그 사법판단을 통해 시민의 민주적 참여가 증진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고려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체되기를 희망한다.

3. 사법 판단의 투명성과 사법민주화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이 있다. 우리 사법에서 이 구호는 모든 법관들의 다짐처럼 보인다. 하지만 민주주의 헌법의 지배를 받는 시민들에게는 법원의 판결 또한 알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굳이 이러한 권리담론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법의 공적 기능에서 판결의 공개와 그에 대한 비판은 논리 필연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거의 대부분의 공적 결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토론된다는 점에 있다. 민주적 토론과 비판 측면에서 재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재판에 물리적 영향력만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토론은 장려되어야 한다.

최근 영장판결과 관련한 시민의 불만이 고조된 것은, 그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간적, 인적 자원 측면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도 모른 채 판사의 견해에 모두 입을 막고 따라야 한다는 제도는 민주적이지 못하다. 헌법적이지도 못하다.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영장판결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여기도 예외가 있다)을 제외하고 하

급심 판결의 판결문을 입수하기는 여전히 불편하고 어렵다. 법원에 와서 보라는 반론,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변명을 꽤 오래 들어왔지만, 역시 민주적이지 못하다. 전자정부 시대 국가원수는 자신의 스케줄을 분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재판 내용이 국민에게 쉽게 입수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금 언론과 시민들이 수행하는 법원 비판의 대부분은 판결 내용과 근거에 대한 것이다. 판결 비판을 위해 법관의 신상까지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조용히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펼치는 재판의 향연을 구경만 해야 한다는 명령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미국 헌법이 배심재판 받을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명기하고, 배심의 선정에 법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법에 무지한 일반인조차 설득할 수 없는 법적 판단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IV. 결론 : 언론의 사법보도 개선을 위한 제언

물론 가짜뉴스나 선정적 기사를 통해 독자・시청자를 확보하려는 언론 보도는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현행법 체계로도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법에 대한 언론의 기본적 사명, 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사법의 공적 역할을 재인식하여야 하고, 사법권 독립과 비판의 수용에 대해 지금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재판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은 재판 내용을 쉽게 입수하여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내성을 사법 스스로 기르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민은 사법부의 독립을 결코 해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모든 정치적 시도들을 국민들이 걸러내 줄 것이다.

[세션 2] 토론

지정토론문

김 양 순 (한국방송공사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허 진 성 (대전대 법학과 교수)

[세션 2]
지정토론 1

지정토론문

김 양 순 (한국방송공사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적 사안 하나하나는 현재적 국민 관심사다. 법정에 선 주체들의 토막 난 발언도 기사화되며, 각각의 언론사들이 써내는 파편화된 정보들을 조합하면 하나의 사실관계가 추론되기도 한다. '판사 신상털기' 등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보도는 이 사건과 관련된 숱한 인물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를 국민들이 그만큼 눈여겨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관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여론재판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장철준 교수의 "법관은 '공인'(public figure)이며, 그간의 사법성역을 깨고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제발제는 현업에 종사하는 기자 이전에 하나의 시민으로서도 동의한다. 특히 사법부의 자성을 권하며, 현 사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흔히 말하는 '적절한 규제'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의 언론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사법부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길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논증은 실체적 민주주의의 확립과 결이 같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

다음은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현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1. 미네르바 사건과 적폐 판사 5적

판사들의 이른바 '신상털이' 와 관련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1월 12일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1]과 관련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상에 유포되자, 검찰은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힌다. 검찰이 영장판사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수사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었고, 해당 기사는 거의 모든 매체가 받아서 언론을 장식했다. 그러나 당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영장판사의 신상이란 인터넷 '아고라' 에 한 네티즌이 올린, 김 판사의 출신학교와 김 판사가 내린 판결 몇 가지가 전부였다. 인터넷에 '김용상 판사' 라고 치면 나오는 정보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신상털이' 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판사 신상털이' 를 범죄로 규정하고 정치권에서는 '여론재판' 을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각 언론들은 기사 뿐 아니라 사설까지 활용해 '사법 위기' 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7년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물들에 대한 판사들의 영장기각 - 이번에는 발부가 아니라 기각이다 - 이 도마에 오르며 '적폐판사 5적' 이라는 이름으로 판사들의 신상을 담은 뉴스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8년 전 같으

1) '미네르바' 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통해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을 게시해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1978년)씨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이후 박대성 (1978년)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헌판결을 받았다.

면 검찰에서 나서서 수사를 했을 만한 사안이다. 이른바 '털린' 신상의 범위나 내용의 구체성이 김용상 전 판사 때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차이는 무엇일까. 당시에 이 같은 내용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면 아마 내용은 정반대가 아니었을까?

2. 소위 '신상털이'의 주체는 누구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영장전담판사들의 학력과 과거 판결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언론사가 아니었다. 굳이 따지자면 인터넷에서 최근 활동을 시작한 '뉴비시(NewBC)' 라는 정치 커뮤니티에서 한 시민기자가 2017년 9월 10일 '[주장] 적폐에 부역하는 판사 5적' [2]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여기에 생성된 카드뉴스 이미지가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확대재생산된 것이다.

이후 일명 '우병우 사단' 등에 대한 영장기각에 반발하는 여론을 기사화한 사례는 박범계, 안민석, 이재정 등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영장판사들의 신상을 언론에서 적시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발제자가 서문에 짚은 바대로, 언론은 잘못된 보도나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만큼 영장기각 판사들의, 이른바 '신상' 을 무리하게 적시하지 않는 관행을 갖고 있다. 판사들의 신상털이에 대해 기사화한 언론사는 TV조선으로 9월 8일 '영장기각 판사들의 도 넘은 신상털이' [3]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작성

2) 뉴비씨 '적폐에 부역하는 판사 5적' 카드 형식 시민 기사(링크 2017. 9. 10.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comm1&wr_id=4277)
3) TV조선 '도 넘은 판사 신상털이' (2017. 9. 8.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8/2017090890119.html)

했는데, 내용은 역시 정치인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수준이었다.

발단은 인터넷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인터넷은 뉴스전달과 의제설정, 여론 확산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몇몇 인터넷 게시판 - 일간베스트나 보배드림 등 다수의 적극적 사용자가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게시판 - 은 여론 형성 공간 뿐 아니라 이른바 '신상털기' 공간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더구나 쌍방적이고 익명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으로 인해 언론에 주어지는 '표현의 자유' 와 같은 정도 및 수준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언론의 '사법보도' 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법평설' 을 같은 수준에서 놓고 볼 것인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문제가 되는 담화 생산 주체에 대한 분명한 가름이 필요해 보인다.

3. '신상'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얼마 전 괌에서 아이들을 차 안에 두고 마트에 장을 보러갔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한국인 법조인 부부의 신상이 그야말로 '털렸다' .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괌 현지에서 경찰이 배포한 '머그샷' 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면서 가능했다. '머그샷' 에 나온 이들 부부의 얼굴과 이름을 인터넷에 치면 출신 학교와 직장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는 구조였다.

최근 문제가 된 영장판사들의 신상정보라는 것은 어떠한가? 역시 인터넷에서 몇 번의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이에 대해

‘신상을 털었다’ 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과연 ‘신상’ 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인지, 법조인의 ‘신상’ 이란 연예인의 신상 혹은 선출직 공직자의 신상, 범죄자의 신상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가능한 것인가?

4. 법조계의 투명성 확보와 언론계의 노력

법원을 향한 시민 불신의 이유에는 투명성에 대한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장철준 교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고 실질적이다. 특히 영장 판사의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외에는 마땅한 법리가 공개된 바가 없다. 영장판결 뿐 아니라 하급심 판결문을 입수하기 불편하고 어렵다는 지적 역시 깊이 공감된다.

전자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가장 정보공개에 더딘 곳이 법조계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역시 법원의 정보공개에 실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는 국민배심원제가 도입된 이후의 데이터를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중이다. 그런데 각각의 사건에서 배심원 몇 명이 결정을 내렸는지, 선정요건, 응답률, 지불된 보수, 해당 사건의 판결문(개인정보 삭제)을 요청했으나 해당 정보가 없다는 답신만을 받았을 뿐이다. 국민재판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노동권 관련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 도서관에서 일일이 키워드를 넣어 판결문 목록을 만들고 – 대법원 도서관 사용 시간도, 요건도 너무 까다롭다! – 이를 검색해서 찾아내야 한다. 전문보도를 하는 데이터저널리즘팀도 난색을 표하는 판결문 법리를 일반 기자들이 하루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이를 보통의 일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히 고문 수준이라고 본다.

법원의 판결문은 이미 전자판결로 바뀐 지 오래다.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일반인들에게 키워드 검색을 허가하고, 법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이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투명함과 피드백은 데이터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언론계의 노력 역시 간과될 수 없다.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미국 저널리즘 스쿨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libel' 이다. "How about libel?" 은 기자들이 모든 기사를 쓸 때 한 번 씩은 스스로에게 혹은 데스크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가르친다. 여기에서의 명예훼손 여부는 그러나, 기사를 검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만큼 진실 추구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 탄탄한 소스를 갖췄는지 스스로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질문이다.

새로운 저널리즘으로 인식되는 데이터저널리즘이나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영장기각과 관련된 사법보도에 있어 이른바 '양승태 키즈' 에 대한 언론보도가 결국 팩트체크로 귀결된 것은 올바른 저널리즘의 사례라고 본다. 팩트체크 전문 인터넷 언론 '더팩트' [4]는 이른바 영장기각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갈이한 영장판사가 직접적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작성해 논란을 잠재웠다. SBS의 데이터저널리즘팀인 '마부작침'

4) 더팩트 "[팩트체크] 법원 검찰 영장충돌, 양승태 키즈가 원인이라고?" (2017. 9. 12. http://news.tf.co.kr/read/ptoday/1701911.htm)

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사장 인사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사[5]를 통해 신임 검사장들의 이름과 출신지, 출신 학교 등을 공개하면서 데이터로 입증하는 '올바른 법조인 신상공개' 보도를 보여줬다.

5. 인터넷 커뮤니티와 '표현의 자유'

과도한 신상털이나 악의적 게시물의 발원지로 지적되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시금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규제하는 패러다임은 숙고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필터링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술적인 방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언론의 플랫폼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과의 융합으로 선을 긋기 어려워진 현실에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언론보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언론보도는 다시금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자체에 거부가 일수도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완전무결한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에서 댓글공작을 하고, 나체사진을 합성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확대해서 퍼뜨렸다는 것을 상기하면, 국가권력이 보란듯이 남용하는 '표현의 자유'는 대량살상무기와 진배없다. 익명성에 의한 여론조작이나 패거리 여론, 여론 재판 등은 기존 언론과 동일선상

5) SBS 마부작침 문재인정부 '조직논리' 깬 검사장 인사...정치검사 솎아내기 시작?(2017. 7. 28.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19770&plink=ORI&cooper=NAVER)

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문제다. 가짜뉴스의 발원지와 확대, 재생산되는 근거지로 지목되는 혐오 사이트 등 특정 사이트에 대한 대응은 언론보도와는 결을 달리할 문제다.

6. 영화 '공범자' 속 신상공개

MBC 피디 출신 최승호 감독의 문제작 '공범자'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MBC 피디수첩에서 방영한 '광우병 파문'이 문제가 되어 피디수첩 담당 피디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승호는 당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디수첩 담당 피디들을 쫓던 검사들을 지목하며 이렇게 말한다.

"왜 기자나 피디들은 무슨 기사를 썼다,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박아서 보여주는데, 왜 우리는 어떤 검사가 누구를 구속했고, 누구를 기소했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로 했다. 피디수첩을 구속하고, 기소한 검사들 이름을..." . 검은 바탕의 화면에는 그들을 구속하고 기소한 검사들의 이름이 흰 글자로 떠오른다.

시민들이 원하는 신상은 그 정도의 신상이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권력을 사용하도록, 견제가 가능한 정도, 그 정도의 신상 공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견제가 되지 않는 공직자도 있겠지만,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고 초록불일 때 건널목을 건너는 정직한 국민으로 살고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법 공개. 딱 그 선이다.

[세션 2]
지정토론 2

지정토론문

허 진 성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법보도를 둘러 싼 법익충돌: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는 사법에 대한 언론보도와 여론의 관심, 법관에 대한 명예훼손, 판사 신상정보 유포 등의 현상과 관련하여 사법권 독립의 의미, 법원의 재판과 여론, 사법의 민주화 등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사법부의 역할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등 헌법적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사법적 판단의 내용,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보도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국민 일반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동의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주권의 원리 및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입각할 때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특별한 고려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은 아니다. 물론 “언론과 여론의 관심·비판이 재판 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만큼의 물리적 위협으로 형성된다면” 이는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고 당연히 그러한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요청되며, 그러한 위협이 실천에 옮겨진 경우에는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진다. 이 또한 원칙적으로 그것이 사법부의 작용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별다른 내용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국가기관 일반의 경우는 물론 사인의 경우에 대해서도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위

협이 있거나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하는 경우가 한 건이라도 혹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의 현실적 사정은 사법부 독립을 운위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헌법질서의 붕괴에 대해 우려해야 하는 단계에 다가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판결을 내린 개별 법관에 대한 보도" 에 대해 사법부가 "강하게 자제를 요구" 하는 것은 "국민적 호응을 결여한 사법 판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신뢰받지 못한 사법은 언제든 교체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 이라는 점과 "사법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열망" 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로서 비판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면, 문제가 되는 판결을 행한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신상과 과거의 이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유포하고 논쟁의 소재로 삼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결 너그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 '이름 없는' 법관만이 재판 외적 환경에 영향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으로 인해 재판 담당자가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고 어떠한 인생 경로를 겪었는지 알고자 하면 신상털기의 오명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직무와 관련된 법관의 과거 행적과 판결 성향을 알고 현재의 판결 내용을 비판하는 것" 을 "현재의 재판 시스템을 무너뜨릴 정도의 부당한 접근" 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언론 보도와 법관에 대한 시민적 비판 속에 사법권 독립 훼손의 징후" 나 "헌법이 정하는 사법권 독립을 위협" 하려는 국민적 의도가 발견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폐쇄성과 재판의 수준에 대한 우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당한 비판과 합리적 논의를 차단하는 외피로 사용하려는 의도에 대한 비판은 나름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법적 판단이 국민적 호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법원이 주장하는 바와 여론과의 괴리에 대해 법원이 여론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사법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문제는 많은 섬세한 논의를 요구하는 심각한 주제라고 판단한다.

재판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회변동을 가로막는 보수적 사법판결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원이 사회 변동을 그대로 수용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것 또한 자명하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 유포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다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매우 역동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국민의 의사’라는 것은 헌법적 차원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사법부도 그러한 원리에 입각한 국가 정치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근대입헌주의 헌법 이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구현된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실제 분쟁과 사건 속에서 수호하고 구현해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낼 것이 기대되는 기관이다. 재판의 결과와 그 이유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타당하지만, 앞서 언급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로 인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언론보도와 여론의 형성, 정치적 사건에 대한 대중 반응의 추이 같은 것들은 매우 급격하게 변하는 현실적 상황이다.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제도를 구상할 때는

그러한 현실적인 변화 속에서 헌법의 기본가치를 보장해내기 위한 최선의 장치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온 것이다. 그렇게 형성되어온 것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같은 원칙, 제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관념들이다.

이러한 이상이 실제로 잘 구현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법기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고찰할 때 사법의 본질과 국민의 의사의 의의에 대해 함께 숙려하는 것이 논의를 충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종 합 토 론

■ **사 회 : 이 승 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위원)

종 합 토 론

이승선(사회자/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위원)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발표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 변호사)

[세션 1] 주제와 관련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규칙상 금지 내지 통제하는 행위가 유독 '재판의 촬영, 녹음, 방송의 중계'에 국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시사주간지인 〈시사인〉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 대해 기자가 직접 방청하고 녹취를 통해 재판장과 변호인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면(紙面) 상으로 재판 상황을 중계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고, 대법원 규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촬영, 녹음, 중계방송만을 통제하는지, 그것이 유독 법정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보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의 질문은, 심급이나 재판단계, 즉 변론이냐 재판 선고냐에 따라 중계, 촬영, 녹음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의 종류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전 국민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특수한 재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는 식의 예외 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의 관련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심급과 재판단계만을 두고 재판중계 허용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선(사회자/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위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지요.

선봉희(동서미디어연구소 박사)

재판중계방송 허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년 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지역에서 시행한 재판중계에 대해 '재판, 법정으로부터 오는 개방'이라고 언급한 논문이 있습니다. 헌법상 사회주의 체제인 러시아와 국내 상황을 비교해보며 오늘 논의를 들었는데, [세션 1] 발제자께서는 주로 피고인의 권익이나 그의 보호에 대한 측면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일단 재판중계를 해본 이후에 부작용 등을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선(사회자/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위원)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재판중계를 하는 현실을 반영해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중계를 수용하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욱(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재판과정이 100% 일반 개인,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것과 기자가 기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중계를 하지 않더라도 언론이 기사를 통해 보도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그 날의 재판내용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내용을 중계방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재판중계방송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와 의도, 목적을 따져보고 그것에 맞게 재판중계

를 하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개재판에서의 '중계'는 재판공개의 한 가지 유형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의 '중계'와 같은 것으로 혼용해 쓰다 보니, 법원조차도 법원조직법상 근거규정을 혼돈해 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 대법원 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대법원 규칙에서도 모든 사건의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따지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적 관심사 등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중계를 한다면 중계를 할 대상사건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칼라 범죄나 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것 등에 대한 재판중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이나 가정폭력 사건, 성폭력 사건 등은 당연히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는 법관 판단에 따라 재판중계 여부가 정해지므로 국민들은 재판중계 여부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면 사법부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판중계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대법원 변론 공개 기준 등도 보다 상세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은 사회제도의 산물이기 때문에 여론이 합리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면 여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여론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여론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션 2] 발제자께서 배심재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다뤄진 시국 사건이 A지역에서는 유죄로, B지역에서는 무죄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 법 제도를 갖고 있어 주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의 법률에 따르는 대

한민국에서 지역마다 서로 다른 평결이 나온다면 이를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문법 국가인 미국에서는 여론에 따라 재판을 하고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잘 모르겠으나, 개방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개방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의 투명성을 위해 개방할 수 있는 것과 개방하면 안 될 것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승선(사회자/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중(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저는 [세션 1] 토론자지만 [세션 2] 발표를 청취하며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션 2] 발제자께서는 사법부가 법관들의 이름조차도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공개하길 꺼린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법원장의 이름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법원 복도에 어떤 재판장이, 어느 판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지 게시되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들의 경우, 언론을 통해 재판장의 이름이 모두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재판중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중계로 인해 법관 본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70% 정도의 판사들이 재판중계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나 피고인들이 자신이 법정에서 한 말이 전부 공개되기

를 원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비판이 쏠리는 사건 대부분은 보혁(保革) 대결의 대립선상에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그럴 때일수록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의무에 따라 열심히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판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판사들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형식적 증거주의,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주의라고 해서 증거를 제시해야 할 사람이 제시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재판작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면 판사들의 고뇌에 찬 작업, 결론에 대해 수긍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판사들도 자신들이 내린 결론에 대한 비난은 얼마든지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법관의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은 자제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승선(사회자/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위원)

의견 감사합니다. 추가로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순(KBS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세션 1] 발제자께서 국민참여재판의 상반된 결과에 대해 지적해주셨는데,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동안의 형량 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내린 형량과 판사의 형량 정도를 비교하

니 전체 형량의 차이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배심원단이 내린 형량과 판사가 생각한 양형이 거의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심, 2심에 불복한 케이스는 3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만큼 국민참여재판이 여론재판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션 1] 발제자께서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판사들이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론재판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동욱(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단과 판사의 양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법계 국가에서 배심제를 실시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배심제를 도입했다가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전문 법관제로 되돌리기는 곤란하니 참심제, 즉 재판정에서 법관의 역할을 전문가가 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는 그 사회의 가치가 판결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배심제가 적합합니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는 국가가 추구하는 질서를 정하고 법을 세세하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판사들이 하고, 법리적 공방은 검사와 변호사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사실 판단이 곧바로 법적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 판단 등의 과정을 수행하는 전문가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법률적 쟁점이 없는 사건들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배심

재판에서 평결이 며칠씩 이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루 안에 다 끝내야 합니다. 당일 종결될 정도의,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겁니다. 판사가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도 본인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인신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배심원제가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철준(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배심제라고 해서 판결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법관의 판단이라고 해서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여론형성 기능을 너무 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미국은 약 200년 간 사법에 대한 공격이 존재했던 사회입니다. 1950년대까지 실질적으로 노예제가 유지되었고 그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엄청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은 건전한 토론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수준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여론형성기능을 너무 폄하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재판관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법관의 이름이 아니라 해당 법관이 어떤 법적 성향을 가지고 법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될지 모르는데, 법관의 이름만 알고 재판에 임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판을 공개했을 때 판사들이 짊어져야 할 압력, 무게, 멍에의 수준이 덜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결의 과정을 공개하는 대신,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도 넘은

비난, 혐오사이트를 통한 유언비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대응은 법관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 비난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선(사회자/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위원)

두 분 발제자와 여러 토론자 분들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책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MEMO

MEMO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사무처 및 서울중재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 02) 397-3114 언론분쟁상담 : 02)397-3000, 3010, 3100 팩스 : 02) 397-3089
부산중재부	부산 수영구 수영로 739(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6층 전화 : 051) 759-7083~4 / 팩스 : 051) 759-7093
대구중재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26(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5층 전화 : 053) 763-0020~1 / 팩스 : 053) 763-0242
광주중재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110(치평동) 우체국보험회관 5층 전화 : 062) 676-0360~1 / 팩스 : 062) 676-0362
대전중재부	대전 서구 도산로 450(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5층 전화 : 042) 525-0778~9 / 팩스 : 042) 525-0768
경기중재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 031) 211-9022, 9027 / 팩스 : 031) 212-0223
강원중재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16(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 033) 255-2878~9 / 팩스 : 033) 255-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전화 : 043) 286-8081, 8083 / 팩스 : 043) 286-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 063) 288-0010, 0981 / 팩스 : 063) 288-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전화 : 055) 263-1780, 1787 / 팩스 : 055) 263-1769
제주중재부	제주 제주시 남광북 5길 6(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 064) 722-3328, 3352 / 팩스 : 064) 726-3201